인지세 납부 안내

인지세 안내

부동산 분양계약은 인지세 과세대상이며, 분양계약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시고 정부수입인지를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

인지세 납부 안내

과세 대상	※ 관련법령 :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,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- 부동산 분양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 과세 대상임 - 계약 당사자간 서명날인을 마친 때 계약서 별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인지세를 납부해야함	
납부 방법 및 기한	- 분양계약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	
전자수입인지 구입처	오프라인	우체국, 은행(해당 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)
	온라인	전자수입인지(https://www.e-revenuestamp.or.kr)_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

인지세 납부액

구분	인지세 세액	
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(분양계약서)	1,000만원 ~ 3,000만원	2만원
	3,000만원 ~ 5,000만원	4만원
	5,000만원 ~ 1억원	7만원
	1억원 ~ 10억원	15만원
	10억원 초과	35만원

전자수입인지 구매방법 안내

1 해당 홈페이지 접속 ➡ 전자수입인지(www.e-revenuestamp.or.kr) 또는 포털사이트 검색창 「전자수입인지」 검색

2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

3 비회원서비스 또는 회원로그인 후 구매

4 구매 - 납부정보입력

① 용도 : 인지세 납부

② 과세문서 종류 :
1.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

③ 금액 : 15만원 또는 35만원

④ 건수 : 1건

⑤ 확인 및 결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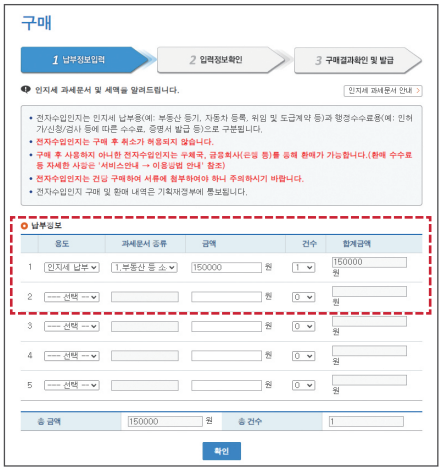

5 출력

※ 전자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(재발행 불가, 테스트출력 요망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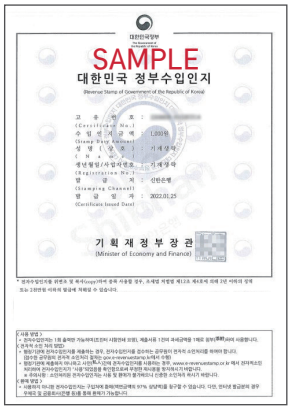

▣ 전자수입인지 구매는 가까운 우체국 또는 은행을 방문하시면 더욱 간편합니다.